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74

발의연월일: 2024. 7. 22.

발 의 자:김종양・고동진・조지연

정희용 · 김성원 · 이달희

백종헌 · 윤한홍 · 이재강

한기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도 오염토양 정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 보하고자 함.

또한,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장기분할상환 대상을 사회기반시설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추진 시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담금을 추가하여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공장신설업종제한을 폐지하여 다양한 산업시설군 유치 및 입주기업 진입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에서는 「토양환경보전 법」 제15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 ① 국방부장관은 토양 오염 제거와 관련하여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종료 전까지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관리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지관리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① ~ ⑧ (생 략)	처분) ① ~ ⑧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⑨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
	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부지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오염토양
	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u><신 설></u>	⑩ 국방부장관은 토양 오염 제
	거와 관련하여 제10조제1항제3
	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게 정화 사업을 위탁할 수 있
	<u>다.</u>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
구역 등 활용 지원) ① (생 략)	구역 등 활용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
반환공여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를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	
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0 호의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 우.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 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 계 종료 전까지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③·④ (생 략) 제1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 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 구역 개발계획에 의해 반환공 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 지역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 4.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 4.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 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 호의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사 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주한 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종료 전까지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 조.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 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 함한다)을 신설·증설할 수 있 다. 다만, 공장신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한 한다.

② • ③ (생 략)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 면) ① (생략)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 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 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 지법」에 의한 농지조성비, 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 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 다.

③ (생 략)

<u><단서 삭제></u>

② · ③ (현행과 같음)

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 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 담금, 「초지법」에 의한 대체 초지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u>공유수면 점·사용</u>료,_「산지관 리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 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